

內外用 쓰개類에 대한 考察

姜 淳 弟*

A Study on the Women's Veil of Yi-Dynasty

Soon Che Kang

Abstract

The history of the women's veil which was used to hide their face in Yi-Dynasty was discussed. The similar fashion of wearing veil was popular in T'ang China(唐) as Myok-li(羈羅) and Yoo-Mo(帷帽), then it might have influenced the fashion of the women's dress of the Silla Dynasty.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 custom was most popular in Koryo and then continued to Yi-Dynasty. The confucianism of Yi-Dynasty requested very strict moral obligation toward women that veil had to be worn by them whenever going out. It might not be their popular fashion but obligation. There were several types of veil so called; Neoul(羅兀) Jangott(長衣) Suege-China(쓰개치마) Chun-eue(薦衣) Sak-kat(삿갓) Chun-mo(氈帽)etc., which were used as a part of formal dress for women.

From the late 1930, when the new society started to accept women's activities, the customs of wearing veil had been vanishing from the women's dress.

I, 序 言

本論文은 女性의 内外用 쓰개에 대하여 考察한 것이다. 쓰개란 頭飾의 一種으로 頭飾은 머리형태, 首飾, 쓰개(冠帽)로 나눌 수 있고 쓰개는 다시 그 着用目的에 따라서 禮裝用, 防寒用, 外出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中에서 朝鮮朝 女性의 外出用 쓰개는 만부득이外出을 해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려야 했던當時 女性들의 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것으로써, 보다 深刻한 内外의 意味를 갖는 内外用 쓰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의 着用은 國初부터 禮法으로 制度化되고 一代를 通하여 女性服飾의 一部로 着用되었으니 이는 朝鮮朝 女性生活의 한 斷面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朝鮮王朝 末期에 이르러, 儒教的 道德觀 위에 鼎立된 傳統의 女性像의 봉과와 基督教 宣教師들에 依한 女性의 新教育 實施 등은 終來의 女性生活에 새로

운 局面을 보이게 하였다. 즉, 女性의 바깥출입은 점차 자유로워지고 新教育을 받은 女性의 社會進出이 活潑해짐에 따라서 服飾面에도 큰 變化를 가져왔으니 이에 生活의 反映이었던 内外用 쓰개의 着用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제는 애에 우리의 關心 밖으로 밀려나 버린 實情이다.

이러한 趨勢 속에서 内外用 쓰개류에 대한 研究는, 잊혀지고 있는 朝鮮朝 女人의 服飾一面을 定立하고 또한 소홀해지고 있는 우리 服飾의 保存을 위해서도 必要한 데 있다.

本研究는 朝鮮王朝를 中心으로 展開가 되겠으나 論旨의 展開에 앞서 文獻의 記錄을 참고하여 그 源流를 밝히기에 注力했으며 着用樣態나 形制등은 當代의 記錄, 風俗圖, 實物 등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文獻의 記錄이 위주가 되었음에 이에 無理나 腦說이 있었을 것을 自認하며 史料의 充實을 기다려 後日 修正하고 補充하고자 한다.

* 聖心女子 大學 家政學科 講師

Dept. of Home Economics, Song Sim College

II. 時代的 背景 및 始原

A. 時代的 背景

高麗時代 女性들의 道德觀은 이미 新羅末 以來 儒教의 道德觀에 연원하였고 또 그것을 理想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男女의 內外나 守節에 대한 생각이 그리 嚴格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¹⁾

그러나 1392年 李成桂를 太祖로 하는 朝鮮王朝가 세워지고 그의 後繼者들에 의하여 새로운 王朝의 基盤이 確立되어 함께 따라 여성들의 世界에는 커다란 變化가 일어났다. 이 時代의 為政者들이 儒教를 政治·Education의 基本理念으로 採擇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儒教의 道德觀念의支配를 받게 된 것이다. 즉 이들은 儒教의 女性觀의 確立을 위하여 不斷히 努力を 했었는데 이는 高麗末 以來로 여성들의 風紀가 素亂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婦德이 크게 損傷되는 理由가 女性의 外出에 基因하는 것이라 하여 그外出을 嚴格하게 制度의 으로 規制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 여성들의 自由로운 바깥 출입이란 想像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士族婦女 出入之際 必蔽其面」이라 하였으니²⁾ 바깥 출입時 「婦女掩面」의 制度는閉鎖된 女人的 生活 속에서 朝鮮王朝 一代를 걸쳐 禮法으로써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오게 되었다.

末期에 이르러는 西歐的 劢力의 急激한 來侵으로 開港에 따른 새로운挑戰에 直面하게 되었고, 그 후 1884年 甲申政變에서開始된 近代的 革新運動은 1894年 甲午改革에 의하여 制度의 으로 일단은 結實을 보게 되었으니, 이 새로운 時代의潮流는 女性史에도 큰 變化를 일으키게 하였다. 즉 1886年을 出發點으로 하여 各種의近代의 女性團體가 設立됨으로써, 이에 따른 女性의 Education과 地位向上을 위한 自律의 女性運動의 展開, 近代의 女性를 받은 新女性의 社會進出 등은 終來의 傳統의 女性觀에 對한 本格的 批判과 함께 새로운 女性像을 提示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閉鎖되었던 女性生活을 急轉換 시키는 契機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傳統의 女性의 價值構造와 服飾生活面에 도 결정적인 轉換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에 오랫동안 女性의 生活과 密着되어 온 內外用 쓰개의 着用도 終息을 告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 始原 및 發達

內外用 쓰개를 用語는 前記한 바, 바깥 출입 時 『 얼굴을 가리던 쓰개』

을 가리기 위하여 使用했던 朝鮮朝 女性의 外出用 쓰개를 일컫는 것으로써 보다 強力한 道德的 規範에서 禮法으로 要求된 것임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의 源流는 바깥 출입 時 『 얼굴을 가리던 쓰개』(蓋頭)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徐號의 高麗圖經 貴婦條에는 盖頭가 當時(高麗) 婦女子들에게 널리 流行되고 있었음을 적고 있어³⁾ 이의 存在는 좀 더 遷及하여 찾아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그런데 同書 卷二十二 女騎條에는

「今觀女俗 蒙首之制 豈羈縛之遺法歟」

라고 하였으니 羈縛은 帷帽과 함께 唐에서 流行했던 婦人 頭飾이었는 바, 이에 對하여 舊唐書 輿服志에는

「羈縛은 戎夷의 全身障蔽를 爲한 頭飾이 隋를 거쳐 唐의 宮樣으로 된 것으로써, 唐 初期부터 宮人騎馬時, 또는 婦人们이 蔽身의 目的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永徽以後 (650~) 羈縛가 차차 없어지면서 이에 代身하여 帷帽가 則天之後 (684~)에 크게 유행하였다」⁴⁾

고 적고 있다. 또 中華古今注에는 羈縛의 形態를

「羈縛之象 類今之方巾 全身障蔽 繪帛爲」

라 하여 그 形態가 머리에 써서 全身을 가릴 만큼 길었음을 보이고 있는데, 唐代의 服飾 中女子 服飾條에는

「帷帽의 形態는 羈縛에 비하여 簡單하게 된 것인 듯 하며, 陶俑에 머리(頭) 및 목(頸部)을 가리는 頭巾 모양의 것을 着用하게 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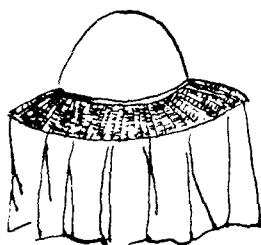
하여 陶俑에서 帷帽의 모습을 指摘하고 있으며 (도 1, 2)



(圖 1) 帷帽(唐代의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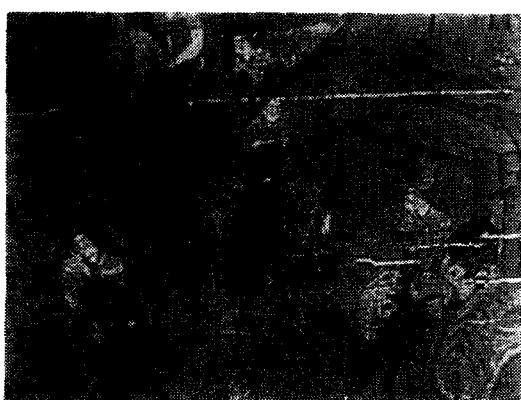


(圖 2) 帷帽(唐代의 服飾)



(圖 3) 帷帽(三才圖會)

三才圖會에는 笠子型의 冠帽에 짧은 너울이 指帳처럼
둘리워져 있는 帷帽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3)
帷帽는 全身을 가렸던 罩羅에 代身하여 簡便을
後日 着用하게 된 것으로써 이는 쓰개로서의 進展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도 4).



(圖 4) 帷帽 (唐人明皇幸蜀圖部分(古宮名畫選華))

그리면 우리나라에서의 着用은 어떠한가. 盖頭에 대한 첫 記錄은 徐兢의 高麗圖經 卷二十 貴婦條의

「婦人之飾…自羅蒙首 製以三幅 幅長八尺 自頂垂下
唯露面目」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依하면 高麗의 것은 形態에 있어서도 全身을 가렸던 唐의 罩羅와 매우 恰似했음을 보이고 있어 前記했던 「蒙首之制 豈蒙羅之遺法歟」라는 기록은 보다 具體的 意味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唐에서 罩羅·帷帽등의 쓰개가 流行하고 있음 때 唐과의 交流가 活潑하여 服飾面에도 그 영향이 커었던 統一新羅代에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보다 훨씬 後인 高麗代에야 罩羅의 遺制라는 蒙首가 널리 流行한 理由는 무엇일까. 이에 對하여 金東旭氏는

「罩羅니 帷帽니 하는 것도 新羅時代에 貴族사이에 이미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新羅時代에 騎馬가 流行하였던 바, 이런 面에서도 이것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짙다」⁵⁾

하여 이 制度가 五胡一隋一唐을 거쳐 新羅時代에 이미 전해졌을 可能性에 대하여 적고 있으며, 柳喜卿氏는 高麗가 사라센과의 交易를 活潑하게 했던 사실에 비추어 內外를 위해 머리를 덮고 눈만 내 놓았던 西域界女人의 風俗이 高麗에 적수입 되었을 것이라는 테에 可能性을 두고 있다.⁶⁾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쓰개類가 新羅時代에 果然 있었으며, 高麗의 蒙首가 唐에서 果然 유래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新羅에는 이들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記事를 찾을 수가 없어 무엇이라고 斷案을 내린다는 것은 多分히 推測의範圍을 벗어나지 못하며, 西域女人들의 全身障蔽의 俗習이 高麗에 적수입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假定 또한 謐然성이 있다고는 여겨지나 여기에는 後代의 記錄에서 몇 가지 참고할 점이 있어 보인다.

蒙首는 즉 盖頭인 바 朝鮮王朝代에는 羅兀이란 名稱으로 國末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曹伸은 調聞瑣錄에서 羅兀의 形態를 說明하는 中에

「이것은 唐의 罩羅·帷帽의 遺制이며 혹은 盖頭라고도 한다」

하였고, 李陸의 青坡雜志에는

「方幅의 紫羅로 몸을 가리운 것을 俗稱 盖頭라 하였고 이는 唐의 帷帽의 制」

라고 하였으며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類似한 記錄이 散見되는 바,⁷⁾ 이들은 蒙首나 羅兀이 唐에서 遺來된 것임을 指摘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韓致齋은 海東釋史 卷二十 儀物 土庶婦人條에

「按此本國羅兀之制 今宮人戴之 徐兢圖經
高麗婦人 旡羅蒙首 餘被馬上 復加笠焉
卽唐宮人黑羃離之遺法 蓋亦此制也」

라고 하였고, 同書 卷二十八 雜俗條에서 高麗代의 風俗을 적는 중에도

「昔唐武德貞觀中 宮人騎馬多 黑羃離而
全身蔽障 今觀麗俗 蒙首之制 豈羃離之遺法歟」

라 하였으니 以上的 記錄들을 綜合해 볼 때에 高麗의 蒙首나 朝鮮王朝代의 羅兀은 그 根源을 戎夷에 둔 唐의 羃離와 帷帽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唐의 羃離·帷帽의 制가 일단은 新羅에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年代의으로 보아서 新羅에 이러한 流行이 傳해진 것은 적어도 三國統一 後인 AD 670年 以後일 것임을勘察해 볼 때에 다음의 記錄에 留意해야 할 必要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舊唐書 與服志에

「則天之後 帷帽大行 羃離漸息 中宗即位 宮禁寬弛
公私婦人 無復羃離之制 開元初 從駕宮人 騎馬者 皆
著胡帽 靚粧露面 無復障蔽 土庶之家 又相倣效 帷帽
之 制絕不行用 又露面馳騁」

이라 하여 中宗즉위 후 羃離가 없어지고 開元(713~)初 부터는 帷帽의 制도 거의 終息을告하여 露面時代가 되었음을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新羅에 전해진 後과 2,30年 後부터는 唐에서도 점차로 없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事實은 결국 新羅에서 羃離나 帷帽등의 쓰개가 널리 流行되지 못했던 理由가 있을 것이라는 推測을 可能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의 着用은 별로 論議의 對象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리하여 興德王 九年(834)에 公布된 服飾禁制條에서도 그面貌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想慮된다.

그러면 그 後代인 高麗代에 크게 流行한 理由는 무엇인가. 여기에 看過할 수 없는 것이 高麗의 海上貿易의 繁榮에 따른 對 사라센과의 交易關係이다. 즉 高麗의 海上貿易의範圍는 멀리 사라센에 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사라센人们은 高麗에 와서 벼슬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西域界의 文化를 들여와 高麗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⁹⁾ 아마도 이때에 西域界女人의 全身障蔽의 習俗이 高麗人들을 刺戟하게 되었고 이에 비로소 前代의 羃離나 帷帽의 遺制인 쓰개(蓋頭)가 高麗 women를 사이에 流行하게 된 것이 아닐가 한다.

그리하여 朝鮮王朝로 전해졌는데 이때에는 蓋頭가 보다 彻底한 内外의 意味를 가지고 禮法으로 制度화되어 着用되었으니, 女性이 外出時 얼굴을 가리는 風俗은 高麗 以前부터 우리 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想慮

되어 꽤 오랜 歷史를 지닌 것으로 推測되나 보다 強要된 内外用의 意味를 가지고 着用하게 된 것은 朝鮮王朝 부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蓋頭는 朝鮮朝에 있어서 女性의 바깥출입時附屬衣類로써 必需品化하기에 이르렀고 朝鮮王朝 五百年을 전해 내려오면서 그 種類도 多樣하였음을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叙述하려 한다.

III. 内外用 쓰개의 種類

A. 奈을(羅兀)

羅兀은 高麗 蒙首의 遺習으로써 朝鮮朝 女人的 쓰개類 중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이다. 이것은 國初부터 上流層女人들의 쓰개였고 점차 宮中樣式으로 되어 國末까지 存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形態는 대체로 高麗의 蒙首와 비슷하나 朝鮮朝의 羅兀은 「紗垂四面 掩面覆肩」¹⁰⁾ 이라하여 高麗代보다 훨씬 짧아진 旡羅의 천이 圓笠위해 자루모양으로 내려뜨려져 있는 모습이며 얼굴이 위치하는 부분은 망사같은 것으로 앞을 透視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5)

그런데 國初의 記錄에는 羅兀이란 名稱이 보이지 않고 笠帽 또는, 단지 蓋頭라고만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實錄에서 보면, 太宗 九年 三月條에

「大小婦人の 從婢들은 襪裙을 입지 못하며 笠帽는 芦布만을 使用하여 羅綃를 사용함을 不許하고 그 帽簪의 길이도 主婦와 가지런히 못하게 한다.」



(圖 5) 羅兀

고 했는데, 太宗 12 年 6 月條 可憲府의 上疏文 中에는 「露衣·襖裙·笠帽는 尊者의 服이다. 그런데 지금은 商買 賤女도 다 입고 있어 尊卑를 다시 판별할 수 없다. 이제부터 宮女·上妓·外의 庶人婦女 및 從婢·賤女의 服은 다만 苧布·蒙頭里를 입게 하고 羅紗綢及 笠帽·襖裙을 不許케 하고 上妓도 또한 笠帽를 허치 말아 尊卑의 等을 가르도록 하자.」 하여 下層階級의 笠帽 着用을 禁하고 있다. 또한 太宗 14 年 6 月條에는

「命婦女垂笠帽 禁持扇子 先是婦女笠帽卷其前簷 持扇子以障面 至是命垂子擁蔽其面」

이라 하여 婦女子들이 笠帽의 앞 채양에 달린 천을 말아 올리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므로 命을 내리어 이를 禁하고 있는데, 世宗 元年 實錄에

「司憲府에서는 일전에 만들어진 婦女子의 畫金笠子는 일단 검사하여 小印을 찍어 착용하게 하려 했으나 王이 兩班집 婦女子가 쓴 笠子를 길에서 벗겨 검사하는 것은 不可하다 하였으므로 이후 새로 만드는 것만 그 笠主와 工匠을 아울러 制書에 있는 違律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고 했으니 婦女子의 笠子를 露中에서 檢考하는 것이 不可하다고 한 것은 斟酌컨대 廉(帷帳)을 걷어 올려야 笠子를 볼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笠子는 곧 羅兀 안에 들어가 있는 圓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曹仲의 謾聞彙錄 中

「東方土族 婦女外出 皆以皂羅蒙首 圓笠四垂尺餘而戴之 所以擁蔽其面 盖唐幕羅帷帽之遺制 或謂之蓋頭」

와 董越의 朝鮮賦에

「富貴家女 首戴一匣 如大帽簷 垂黑綰以蔽其面」라는 記錄과도 聯關이 된다.

따라서 이들을 綜合해 보면 朝鮮初 記錄에 나타난 笠帽나 盖頭는 高麗代의 蒙首에 해당하는 女人 專用의 쓰개로써 朝鮮朝에는 初期부터 宮中樣式 또는 班家 婦女子들의 樣式으로 上流層에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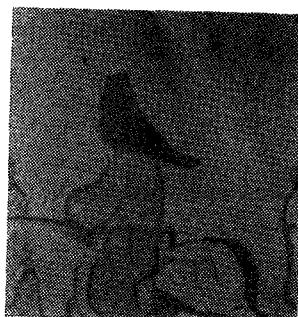
또한 笠帽에는 그 主體가 되는 圓笠과 그 위에 드리워 얼굴을 가리는 천(布帛)의 存在가 보이니 이는 곧 羅兀이다. 따라서 羅兀이란 名稱은 笠子 위에 奈불(羅火) 즉 廉을 드린 笠帽의 形態에서 緣由되어 羅火笠一羅兀笠一羅兀로 불리게 된 것이라 생각되며 嘉禮都監의 前期儀軌에는 羅兀과 汝火 字가 混用되고 있었으나 後代에는 羅兀로 통일되고 있음을 본다.¹⁰⁾

羅兀의 制度에 대하여 國婚定禮에는

「祫羅兀：臺次 紫的羅捌尺五寸 內拱紫的納陸尺

縷子紫的羅一尺二寸 每輯次 大紅真絲一兩五錢 金錢紙三張 梧鄉絲三張 縷作 紫的真絲一錢」

이라 하였는데 嘉禮都監儀軌에서 羅兀의 착용을 보면 그 形制는 階級에 따라 약간 다르나 妃嬪으로 부리 侍女, 尚宮, 騎行內人까지, 步行內人과 本宅內人을 除外한 모든 階層에서 사용하고 있어 宮人들 間에普遍化되었던 樣式임을 알 수 있으며 儀軌의 記錄에는 보이지 않으나 行列圖에는 高宗 明成后 嘉禮代(1866)까지 羅兀의 着用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宮中에서는 朝鮮朝 末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도 6, 7, 8, 9)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

(圖 6) 騎行內人羅兀



(真宗孝純后嘉禮)

(圖 7) 侍女の羅兀



(英祖貞純后嘉禮)

(圖 8) 尚宮의 羅兀



(高宗明成后嘉禮)

(圖 9) 尚宮의 羅兀

B. 장옷(長衣, 藏衣)

장옷은 上流階級에서 쓰던 羅兀의 簡을 쫓아 만들어져 一般婦女子들 사이에서 成習된 것으로서, 後述하려는 쓰개치마와 함께 朝鮮朝 末까지 널리 內外用으로 사용되었다.

장옷의 着用에 대하여 世祖實錄에는 同王 2年 3月 條 梁誠之의 上疏 中에

「나라안의 女子들이 長衣입기를 좋아하여 男子의 모양과 같고 어떤 사람은 이를 衣·裳 사이에 입어 三層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은 服妖인 바 금하자.」
고 한 것으로 보아 장옷은 世祖代에 이미 朝廷에서 論議가 될 程度로 婦女子들 사이에 많이 使用되었던 모양인데 以後에도 장옷의 着用禁止는 절 지켜지지 않았던지 다시 中宗 21年 12月條 實錄에

「士族의 妹로서 대낮에 衣로써 얼굴을 싸고 徒行 往來함은 憎戾하고 其家長인 兄을 推問하였다.」
고 記錄하고 있으니 이는 士族婦女의 장옷 着用을 禁하는 것으로써 庶民婦女에게는 暗暗裡에 許容되고 있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도 解釋된다.

또한 위의 記錄으로 보아 장옷의 길이는 치마보다 짧고 形態는 裡와 비슷하며, (筆者註: 당시 女子의 基本服制는 衣와 裳으로 袍가 없었음에 반해 男子에게는 袍가一般的인 服制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에 장옷의 착용이 男子의 모습과 같았다는 기록은 장옷이 男子의 커다란 袍와 비슷하여 이것을 着用한 女子의 모습이 男子와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着用時는 머리위에 써서 (衣로써 얼굴을 썼다고 했으므로) 얼굴만 내 놓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蕙園의 風俗圖에서나 또는 1910年代의 着用貌襲과도 별다름이 없어 대체로 中宗代의 形態가 별 變化없이 國末까지 이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도 10, 11, 12)

遺物을 對할 수 있는 國末의 장옷을 보면 짙감은 초



(蕙園風俗圖中에서)

(圖 10) 장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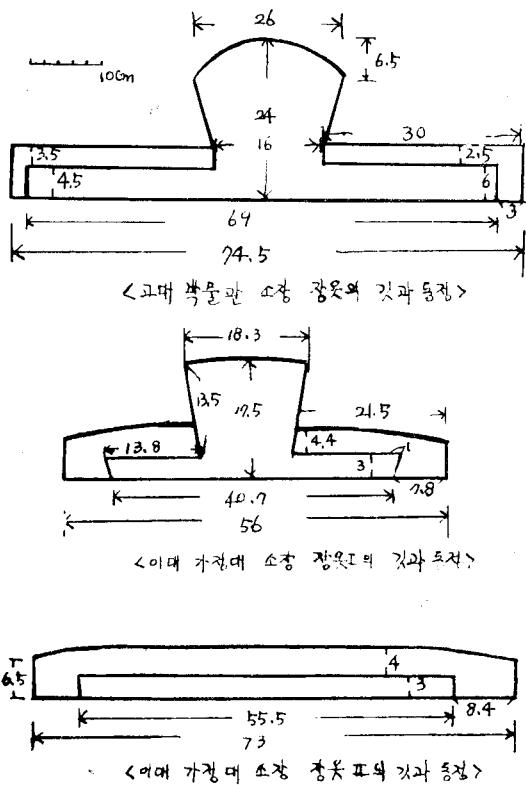
(蕙園風俗圖中에서)

(圖 11) 장 옷



(1910年代)

(圖 12) 장 옷



(■ 13) 장옷 깃과 동정 실측도

록색 명주, 안은 흰색 명주를 사용하였는데 袖口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았으며 깃에는 동정을 달거나 넓적한 흰 형접을 대어 이마 위 정수리 부분에 달도록 되어 있다. (도 13) 앞은 아주 여미어지도록 맷은 단추를 달았고 여기에 고름이 二重으로 양쪽에 달려 있어 손으로 잡아 아무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애초부터 장옷은 上流階級의 羅兀에 代應하여一般婦女子의 內外用 쓰개로 出發한 것으로써, 朝鮮女俗考에도

「常民之妻 則用長衣 以綠色絹紬爲之」

甚長至脰 掩頭面全體」

라 하였으나 蕤園의 風俗圖 중에는 장옷을 입고 있는班嫁婦女子의 모습이 보이고(도 10) 德溫翁主 出嫁時(1837)의 自藏品 중에도 장옷이 있는 것으로 보아後代에는 班人階級에서도 使用했던 것 같다.

國末에 이르러 常班의 差別이 撤廢되고 衣生活에 있어서도 區別 없이 할 수 있게 되자 한때는 오랫동안 中人階級에서 內外用 쓰개로 사용되어 온 장옷보다는 後述하려는 쓰개치마의 着用이 더욱 一般化 된 적도 있었으나 1930年代를 전후로 하여 그 자취를 감추고 말

았다.

C. 쓰개치마

쓰개치마가 언제부터, 어떠한 階層에서 內外用으로 使用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中宗代以後에 登場하여 班人階級에서 使用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中宗二十一年 實錄에 上族婦女의 장옷 着用이 問題視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¹¹⁾ 이에 班人階級 婦女子들이 장옷 아닌 것으로 거창했던 羅兀 대신 만들어 쓰게된 것이 이 쓰개치마 일 것으로 推測되기 때문이다. 이는 羅兀이 中期以後에는 주로 宮中樣式에서 보여 지고 있다는 점과, 朝鮮女俗考의

「兩班之妻 畫出則心乘屋轎 隨以婢僕 或夜間步出
則用裙裳掩面與體 以婢僕持燭前導」

라는 記錄에 의해서도 쓰개치마는 羅兀 대신 쓰인 班家婦女子의 內外用 쓰개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着用形態를 蕤園의 風俗圖에서 보면 보통 치마폭으로 주름을 겹쳐 잡아 이것을 머리위로 불룩하게 쓴 모습으로 이때 치마허리는 열굴 둘레를 감싸 턱 밑에서 마물려질 程度이며 치마끈까지 달려 있는 典型的인 치마의 形態임을 볼 수 있다. (도 14)

末期에는 장옷보다 쓰개치마의 着用이 보다 一般化 하였으니 이것은 常班의 撤廢에 따른 衣生活의 混淆에서 온 것이기도 하거니와 쓰개치마가 장옷보다 簡便하고 손쉽게 마련될 수 있었다는 데에도 基因한 것이 아



(■ 14) 쓰개치마

닐까 한다. 그래서 혼히 옥색 옥양목 치마를 방 안에 걸어 두었다가 문 밖에 나갈 때 손쉽게 쓸 수 있게도 하였는데 개성지방에서는 이것을 쓸치마라고도 하여 옥양목이나 명주로 만들고 계절에 따라 겉 또는 솜을 두어서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¹²⁾

그러나外出時 内外用으로 가장 많이 쓰이던 이 쓰개치마도 1900年頃 부터는 新敎育을 받고 社會에 進出한 新女性와 高官 婦人們에게서 그 使用이 줄었으며 1910年代에는 學校에서도 이의 着用을 廢止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時代的潮流에 浮應한 必然的趨勢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學校에서 쓰개치마의 着用이 廢止되자 登校生 數가 줄었고 이를 우려한 學校에서는 쓰개치마 대신에 검정 우산을 하나씩 내 주어 얼굴을 가리고 다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하니 生活속에 파고 들었던 内外法의 因習은 끈질긴 것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리하여 1930年代에 이르러서는 一部地方에서도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애초에는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우산도 점차 内外의 目的과는相關 없이 使用이 되었으니 이로써 女性의 内外用 쓰개는 완전히 終息을告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D. 薦衣·삿갓

장옷을 지방에서는 薦衣라고도 하였으나 薦衣와 장옷은 그 形態가 다르다. 즉 薦衣 着用時 前面의 모습은 장옷과 비슷해 보이나 장옷보다는 길이가 짧고 특히 장옷에 있어서의 소매가 薦衣에는 달려있지 않으며 도련폭도 좁아 대체로 긴 네모진 형태를 하고 있다. 薦衣가 内外用 쓰개로 使用된 것은 朝鮮朝 後期로 생가되는데 形態로 보아 장옷에서 派生되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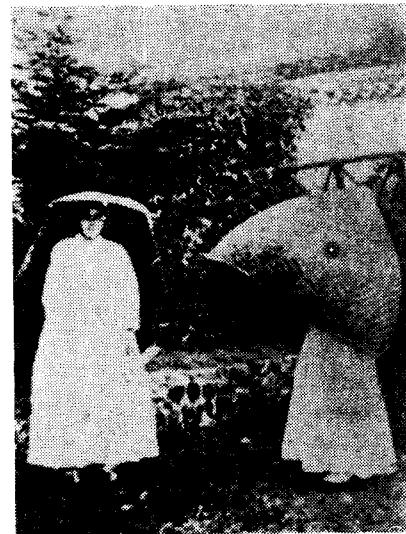
梨大 家政大에는 다흥색에다 연두색안에 솜을 두어서 만든 네모진 薦衣가 있다.

朝鮮女俗考에는

「平壤海州等地 妓女外出 則持盧笠以障面 咸興北青等處 則妓用薦衣 較短於藏衣(長衣) 而以白洋木爲之」라 하여 함흥·북청等地의 薦衣와 함께 平壤·海州等地에는 갈대로 만든 커다란 삿갓이 있어 妓女들의 얼굴가리기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薦衣나 삿갓은 모두 下流層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삿갓이 西北地方에서 内外用으로 생겨난 理由는 南道처럼 布帛이 혼하지 않은 데서 온 까닭이 아닐가 한다.¹³⁾

松京誌 卷二 風俗條에는



(圖 15) 삿갓

「女人들은 대개가 貞潔을 自守한다. 閨理의 下賤한女子도 改嫁를 수치로 안다.出入시는 반드시 篪笠을 쓰고 관례는 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 피하여야 할 때에는 篪笠을 기울려서 가린다.」 하였으니 이것 역시 篪笠 즉 대삿갓이 内外用으로 使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도 15).

E. 기타

面紗：世祖實錄 同王 3年 6月條 記錄에 의하면當時에는 面紗가 兩班婦女子의 内外用 쓰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¹⁴⁾ 그 以後의 使用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仁祖代의 嘉禮都監儀軌에는 中宮·嬪宮의 法服 및 衣襪안에 面紗가 포함되어 있어 이때에 와서는 面紗가 다만 요즈음 新婦의 面紗襪 役割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外出時 内外用 쓰개로는 使用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리마(加尼麼, 加里丫, 加里ヶ, 遮額)：文獻에 나오는 가리마에 대한 표記은 多樣하다.

이것은 너울을 접어올려 머리위에 冊匣과 같이 올려놓은 형태의 것이다. 이러한 것은 蕤園의 風俗圖 중에서 보이는데(도 16) 前代의 記錄인 徐兢의 高麗圖經 卷二十 婦妾條에

「蒙首不下垂 疊於其頂」

이라 하여 蒙首를 아래로 내려뜨리지 아니하고 머리 정수리에 접어 올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朝鮮朝에 있어서의 가리마의 制樣인 바 高麗 以來의 傳統임을



(圖 16) 가리마

집작 할 수 있다.

治谷 三官記에서 趙克善은

「우리나라 婦人들이 김은 비단이나 자색 비단으로
全幅 2尺二寸을 가운데를 점어 두겹으로 하고 두더
운 종이를 그 안에 붙여서 머리에 쓰되 이마에서 머
리를 덮어 뒤로 드리우고 어깨와 등에까지 덮는데
이를 遮額이라 한다.」

하였고 李圭景의 五洲行文箋散稿 卷十五에는

「妓女黑羅의 加尼麼를 이고 醫女는 黑緞의 加尼麼
를 着用한다. 그 형상은 冊匣과 같다. 髢髻위에 인
다.」

고 하였는데 李裕元의 林下筆記 卷十七醫文獻指掌編에
는 「遮額의 制 絶無하다」



(蕙園風俗圖中에시)

(圖 18) 艱 帽

하였으니 이는 高宗代를 표준으로 한 것으로써 末期에
는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麗代에 下流層 女人の 頭飾에서 보여졌던
이 형태가 朝鮮朝에서는 가리마라는 名稱으로 末期까
지 보여지 오랜 歷史가 인정되나 內外用 쓰개라기 보
다는 妓女, 醫女 등 特殊職에서 사용하였던 단순한 쓰
개의 一種으로 봄이 옳을 듯 하다.

眞帽 : 簪의 形象을 가진 女性的 內外用 쓰개이다.

蕙園의 風俗圖에는 트래머리 위에 등에까지 닿는 겹
은 자주색 천으로 된 쓰개를 쓰고 그 위에 簪 形態의
이 眞帽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도 17, 18) 嘉禮都
監儀軌 行列圖에도 醫女와 騎行內人們 중에 어깨까지
닿는 겹은색의 쓰개를 뒤로 내려뜨려 쓰고 그 위에 眞
帽를 着用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도 19, 20)

그런데 眞帽 속의 쓰개의 모습이 前記했던 가리마의
制樣을 彷彿케 하고 있어 注目되는데, 또한 末期의 眞
帽는 기름에 절은 油紙로 簪의 形象을 만들고 여기에
박쥐, 나비, 태극 등의 예쁜무늬와 誕, 福, 富, 貴 등
의 글자들 씨 넣기도 하여 매우 裝飾的인 느낌을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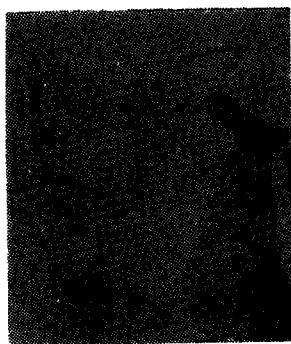
(蕙園風俗圖中에시)

(圖 17) 艰 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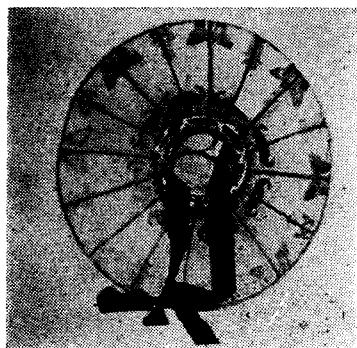


(憲宗明憲后嘉禮)

(圖 19) 騎行內人 眞帽



(憲宗明憲后嘉禮)
(圖 20) 醫女의 罩帽



(石窟善韓國服飾史)
(圖 21) 罩 帽

있어(도 21) 이는 秘苑 遺物中 羅兀 속의 圓笠과도 類似한 點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研究가 必要할 줄 안다.

IV. 結 言

內外用 쓰개란 男女 間의 内外가 嚴格하여 外出時 얼굴을 가려야 했던 朝鮮朝 女性의 外出用 쓰개를 말한다.

女性이 外出時 얼굴을 가리는 風俗이 高麗代에 盛行했음은 徐競의 高麗圖經에서 散見되는데 이의 風俗은 唐에서 流行한 罩羅나 帷帽에서 遺來된 것으로 確認된다. 記錄에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後代의 記錄과 當代의 狀況으로 보아서 統一新羅代에도 이의 遺習은 있었을 것으로 推測되어 高麗代에 盛行하여 朝鮮朝로 전해졌음을 본다.

그러나 朝鮮朝에 들어서는 儒教의 道德觀念의 支配下에 女性의 外出이 嚴格하게 規制를 받게되고 어쩔수

없이 外出을 해야 할 경우 「婦女掩面」의 制度가 禮法으로 強要되자 한낱 流行으로써 성습되던 얼굴가리개(蓋頭)는 이제 보다 徹底한 内外의 意味를 가지고 制度化하게 되었으며 몇 가지의 内外用 쓰개가 國末까지 女性服飾의 一部로 存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高麗 蒙首의 遺制인 羅兀은 國初에는 笠帽로 記錄되어 있으며 이는 班家·宮中에서 使用되었는데, 이것은 圓笠에 너울을 드린 形態인 즉 이에서 羅兀로 불리워 진 것으로써, 점차 宮中樣式化 하여 國末까지 사용되었으며 또한 거창한 羅兀대신 簡便을 쫓아 만들어진 쓰개치마, 장옷 등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代表的인 内外用 쓰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薦衣·삿갓·氈帽등도 下流階級에서 朝鮮朝 末까지 사용되었는데 外出時 女性의 附屬衣類로서 오랫동안 使用되었던 이 内外用 쓰개類도 女性의 社會進出이 活潑해 지면서부터는 1930年代를 전후로 우리의 生活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실정이다.

以上의 考察 중에서 특히 氈帽에 있어서는 몇 가지 疑心되는 점이 있었으나 提示에 끝나고 말았음은 後日의 課題로 미루는 바이다.

引 用 文 獻

1. 韓國女性史, 卷 I, 이대출판부, 191, (1972)
 2. 世家實錄, 卷六十二, 十五年 十二月條.
 3. 徐競, 高麗圖經, 卷十八, 貴婦, 賤使條 卷二十二, 女騎條.
 4. 二十五史, 舊唐書, 卷四十五, 輿服志, 第二十五.
 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 문화사, 261 (1973)
 6.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210, (1975)
 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8. 柳喜卿, 前揭書, 210.
 9. 李能和, 朝鮮女俗考, 第二十章, 羅兀蔽面條.
 10. 李京子, 嘉禮都監儀軌의 服飾研究, 服飾創刊號, 34, (1977)
 11. 中宗實錄, 卷五十八, 二十一年, 十二月條
 12. 柳喜卿, 前揭書, 432.
 13. 柳喜卿, 前揭書, 433.
 14. 世祖實錄, 卷八, 三年 六月條.
- 舊俗婦人出則乘兜子, 外施帷帳 使外人莫敢窺, 其乘馬者, 亦施面紗 東以襪裙, 今人例從苟簡 往便衣卷面紗, 恬不爲怪流俗之弊……